

##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1월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0년 1월 20일(월) 저녁 6시30분
- 장 소 : 무지개회의실
- 참 석 자

박중기	이용자	이애순	윤희채	유경선	허용의	박근미	안윤환	이옥자	김영찬
					X		X	X	
신지현	김인숙	김성화	권영태	고성봉	최철중	홍현표	심상원	이인동	김유환
X					X				
김대영								참석자	참석률
								16명	76.1%

기록 : 김민지

### <회의 순서>

1. 개회선언
2. 이사장 인사말
3. 보고: 서면 보고함 / 자활보고: 심상원 센터장 보고함

### 4.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19년 12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9년 12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10명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2019-12-11	20773	김원자	451010-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2	2019-12-06	7202	신민우	561211-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3	2019-12-11	7206	원용덕	560417-1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4	2019-12-30	20775	이정옥	510115-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5	2019-12-05	7201	이지나	830511-2	경기도 안성시 3동 당
6	2019-12-11	7207	정기봉	640814-1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7	2019-12-02	7199	정기숙	570309-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8	2019-12-11	7207	안경희	640604-2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9	2019-12-11	7206	원정희	810402-1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10	2019-12-11	7206	마원빈	040306-3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2호 의안] 각 위원회별 2019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2019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안이 각 위원회별로 논의되어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별도의 사업계획안을 보고합니다.

※ 별 첨 : 2018년도 안성의료협동조합 사업평가 안

**[논의사항]**

**<경영위원회>**

- 작년에도 말했었는데 작년은 외부사업비가 들어오고 통산 흑자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적자가 났다. 사업비와 순수 당기순이익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 좋겠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당기순이익 금액과 총 당기순이익을 합해서 표시하면 좋겠다.
-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두 가지를 다 봐야 해서 표시를 해드린 사항이다.

**<교육홍보위원회>**

- 대의원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잘 먹고 잘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예산총회 때 볼 때 대의원들 예우라는건 대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 제가 대의원으로 칭한건 총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대의원모임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 1명이라도 더 참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비롯되어 드린 말씀이다.

**<이용위원회>**

- 올해 감두탕 무료로 지급은 안하는건가요?
- 네. 무료지급은 하지 않고 일부 본인부담을 받고 판매를 하자고 이야기 되었다. 본인부담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버려지는게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가치가 없어진 것 같다. 무료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본인부담을 일부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

**<서안성운영위>**

- 현재 서안성지점이 농협건물에 있는데 불안하고 서안성한의원도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규정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연관된 사업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같이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다보면 나중에 자리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강마을위원회>**

- 건강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 네. 그렇게 되어있고 매달 한 번씩 가서 혈당체크를 진행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 임원교육할 때 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자를 볼 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 이사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결정사항] 각 위원회별 2019년도 사업평가안 원안대로 승인**

**[3호 의안] 안성의료협동조합 정관 및 규정 개정의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표준정관 변경 및 보건복지부 점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의료협동조합정관 개정

구(舊) 조문	신(新) 조문	비 고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안성농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 2층            안성농민한의원 :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 2층            새봄치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 3층            우리동네의원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44-3 1층            서안성의원 :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60-2 2층            서안성한의원 :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60-2 2층            (일부개정 2019.03.09.)</p>	<p><b>제4조(사무소의 소재지)</b>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414-5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u>(수정) ② 이 조합의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u>            1. 안성농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2. 안성농민한의원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3. 새봄치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1-6            4. 우리동네의원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44-3 1층            5. 서안성의원 :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60-2 2층            6. 서안성한의원 :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60-2 2층</p>	<p>○ 보건복지부 점검 지적사항.            추가 “호”를 두고 규정</p>
<p><b>제58조(사업의 종류)</b></p>	<p><b>제58조(사업의 종류)</b></p>	<p>○ 복지부 점검 지</p>

구(舊) 조문	신(新) 조문	비 고
<p>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li> <li>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li> <li>3.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li> <li>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ol>	<p>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li> <li>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li> <li>3.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li> <li>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li> <li><b>(추가) 5. 자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임대사업</b></li> </ol>	<p>적사항. 기타사업으로 구분</p>
<p><b>제59조(사업의 이용)</b></p> <p>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u>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u> 이 경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p>	<p><b>제59조(사업의 이용)</b></p> <p>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b>(수정)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b> 이 경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p>	<p>○ 보건복지부 점검 지적사항.</p>

**[논의사항]**

-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지동 414-5으로 되어있는데 의료기관 소재지는 석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애매한 것 같다.
-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 직접 질의를 했고 정관에 의료기관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사를 간 다음에 수정을 하려면 총회를 또 열어야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총회에서 해도 되는지 질의를 해보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의료기관개설신고 변경을 하려면 보건소에 가서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 주소지가 되어있는 정관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간 다음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먼저 변경하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

- 애매한 점이 있으니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 것 같다.
- 그러면 주 사무소도 석정동 1-6으로 변경하겠다.
- 이 부분은 다시 복지부에 질의 후에 변경하면 될 것 같다.

**[결정사항] 주 사무소 주소변경은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수정하고 원안대로 승인**

**[4호 의안] 2019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19년도 수지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지결산안을 보고 받고 결산에 따른 다음의 손실금처분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2019년도 예산대비 결산보고서

▶ 다 음 ◁

구 분	금액(원)	비 고
① 당기 손손실	156,708,632	본점                    당기손손실:    (-)236,251,049원 3동지점                당기순이익:     51,985,167원 서안성지점             당기순이익:     27,557,250원
② 법정적립금	0	당기 순이익의 30% 적립
③ 재가장기요양기관수익	61,456,255	<b>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기년도 이월</b> (2018년 6월부터 재가장기 회계기준이 사회복지회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으로써 그 이후 순이익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자체 이월)
④ 미처분 손실금	156,708,632	①-②-③=④ <b>차기년도 이월</b>
<b>참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적립금 누적액                    30,113,622원</li> <li>▶ 법정적립금 누적액                    91,359,490원</li> <li>▶ 신사업특별 적립금 누적액            287,855,183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li> <li>▶ 자본적립금 누적액                    13,119,184원</li> <li>▶ 재가장기요양기관 적립금 누적액    10,072,965원</li> </ul>

[논의사항]

- 과거에도 차기년도 이월 했던 것 같다.
- 바로하지는 않았었고 2-3년정도 이월하다가 상계를 시켜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상계를 했다.
-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결정사항] 차기년도 이월하는 것으로 결정

[5호 의안] 2019년 결산,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승인의 건

-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대의원 결산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의 안건 및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 1부 식전 행사

---

■ 제 2부 정기 대의원 예산총회

---

- 국민의례
- 이사장 인사말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의사록 서명 날인인 및 서기 선임
- 의사일정 확정
-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
- 상정 의안 심의
  - 제 1호 의안. 2019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 제 2호 의안. 2019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2019년도 사업평가(안)
    - 2019년도 결산(안)
  - 제 3호 의안. 손실금 처분 승인
  - 제 4호 의안. 출자금 확정 및 탈퇴자 출자금 반환 승인
  - 제 5호 의안. 정관개정 승인
  - 제 6호 의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2019년 활동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 기타.

---

■ 폐회 선언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6호 의안] 우리동네의원 진료시간 변경의 건**

▶ 제안 설명 : (3동운영위원회)최근, 야간진료에 대한 환자의 욕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無理하게 야간진료를 하는 것은 경비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은 시간대의 진료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밀집도가 높은 시간대의 진료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료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우리동네의원 진료시간 변경 안.

구분	현행	변경 안
평일	08:30~13:00 / 14:30~19:00 총 진료시간 : 9시간	08:30~13:00 / 14:00~18:30 총 진료시간 : 9시간
월요일	08:30~13:00 / 14:30~21:00 총 진료시간 : 11시간	08:30~13:00 / 14:00~20:00 총 진료시간 : 10.5시간

○ 참고1 : 진료시간대별 환자 정보 및 수입지출 정보.

**<우리동네의원 진료시간>**

	변경 전	변경 후
우리동네의원	8:30~19:00	8:30~18:30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8:30~21:00	8:30~20:00

**<우리동네의원 화요일-금요일 18:30~19:00 내원환자 현황>**

	일평균	총인원(월별)	횟수(월별)
1월	1.5명	29명	19회
2월	1.6명	27명	16회
3월	2.5명	44명	17회
4월	2.4명	42명	17회

5월	2.4명	47명	19회
6월	2.0명	33명	16회
7월	2.0명	37명	18회
8월	1.8명	34명	18회
9월	3명	48명	16회
10월	2.5명	49명	19회
11월	2.1명	37명	17회
합계	23.8명	427명	192회
평균	2.2명	38.82	17.45회

2019년 2 - 2:30 PM. 접수 환자 수	
1월 평균	4.7
2월 평균	4
3월 평균	3.8
4월 평균	4.5
5월 평균	3.9
6월 평균	3.4
7월 평균	4.1
8월 평균	3.8
9월 평균	4.2
10월 평균	5.2
11월 평균	4.8
12월 평균	5.3
2019 평균	4.3

<우리동네의원 화요일-금요일 18:30~19:00 손익표>

과목	우리동네의원	비고
1.매출액 (평균 2.2명 30분 매출)	392,700	환자 1인당 8,000원~13,000원 정도 수익



		평균값 10,500원으로 계산*17일
[직원급여]월급여	370,489	의사1인+업무보조및접수1인(30분급여*17일)
퇴직급여	30,874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10,863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11,169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23,579	근무시간비율(1월~11월평균금액으로계산)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b>V.영업손익</b>	<b>-54,274원</b>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19:00-21:00 내원환자 현황>

월	총인원	시간별 환자 수(월별)	
		7:00~8:00	8:30~9:00
1월	25	7:00~8:00	12
		8:00~8:30	10
		8:30~9:00	3
2월	15	7:00~8:00	12
		8:00~8:30	3
		8:30~9:00	0
3월	39	7:00~8:00	16
		8:00~8:30	19
		8:30~9:00	4
4월	49	7:00~8:00	24
		8:00~8:30	19
		8:30~9:00	6
5월	23	7:00~8:00	14
		8:00~8:30	5
		8:30~9:00	4
6월	36	7:00~8:00	23
		8:00~8:30	11
		8:30~9:00	2
7월	33	7:00~8:00	15
		8:00~8:30	9
		8:30~9:00	9

8월	25	7:00~8:00	16
		8:00~8:30	5
		8:30~9:00	4
9월	44	7:00~8:00	27
		8:00~8:30	12
		8:30~9:00	5
10월	33	7:00~8:00	23
		8:00~8:30	9
		8:30~9:00	1
11월	32	7:00~8:00	22
		8:00~8:30	5
		8:30~9:00	5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19:00-21:00 손익표>

과목	우리동네의원	비고
I.매출액(평균 32.1명 2시간 매출)	337,050	환자 1인당 8,000원~13,000원 정도 수익 평균값 10,500원으로 계산
[직원급여]월급여	392,283	의사1인+업무보조및접수1인 2시간시급*4.5
퇴직급여	32,690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5,755	보험요율*4.5
[복리후생]건강보험	5,917	보험요율*4.5
[복리후생]고용보험	3,465	근무시간비율 (1월~11월평균금액으로계산)*4.5
[복리후생]야근식대	58,500	1인 6,500원*2*4.5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V.영업손익	-163,292원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19:00-20:00 손익표>

과목	우리동네의원	비고
I.매출액(평균 18.5명 1시간 매출)	194,250	환자 1인당 8,000원~13,000원 정도 수익 평균값 10,500원으로 계산

[직원급여]월급여	196,141	의사1인+업무보조및접수1인 1시간시급*4.5
퇴직급여	16,345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2,877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2,958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1,732	근무시간비율(1월~11월평균금액으로계산)
[복리후생]야근식대	58,500	1인 6,500원*2*4.5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b>V.영업손익</b>	<b>-84,303원</b>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20:00-21:00 손익표>

과목	우리동네의원	비고
1.매출액(평균 13.6명 1시간 매출)	142,800	환자 1인당 8,000원~13,000원 정도 수익 평균값 10,500원으로 계산
[직원급여]월급여	196,141	의사1인+업무보조및접수1인 1시간시급*4.5
퇴직급여	16,345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2,877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2,958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1,732	근무시간비율(1월~11월평균금액으로계산)
[복리후생]야근식대	58,500	1인 6,500원*2*4.5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V.영업손익	-135,753원	
--------	-----------	--

<우리동네의원 야간진료 20:30-21:00 손익표>

과목	우리동네의원	비고
I.매출액(평균 3.9명 30분 매출)	40,950	환자 1인당 8,000원~13,000원 정도 수익 평균값 10,500원으로 계산
[직원급여]월급여	98,070	의사1인+업무보조및접수1인 1시간시급*4.5
퇴직급여	8,172	급여/12
[복리후생]국민연금	1,438	보험요율
[복리후생]건강보험	1,479	보험요율
[복리후생]고용보험	866	근무시간비율(1월~11월평균금액으로계산)
[복리후생]야근식대	58,500	1인 6,500원*2*4.5
[통신비]전화요금		근무시간비율
[통신비]컴퓨터통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수도료]웅진렌탈		
[전력비]전기요금		근무시간비율
[제세공과]세금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수선비 발생확률이 낮음
[보험료]화재보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보험료]산재보험		근무시간비율
소모품비		근무시간비율
[지급수수]카드수수		근무시간과 상관없는 지출
[지급수수]보안장치		
[지급수수]폐기물		
V.영업손익	-127,575원	

○ 참고2 : 우리동네의원 논의 사항

<p><b>[논의사항]</b></p> <p>- 우리의 환경이 면 단위에 있어서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지 못하면 1시간 이상씩 가야하는 환경은 아니고 현재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고 추세이니 생산성도 생각해서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인데 줄이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동은 급식실이 없어서 점심시간도 늘려서 작년에 시행했는데 아마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는 시간을 알고 있고, 일찍 온다고 해도 조금 기다리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점심시간도 기존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점심시간에 교육을 하기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는데 3동의 점심시간이 30분 더 것이 널널한게 아니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내년에 예산이 나오지 않아 매출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p> <p>- 직원들의 생각은 어땠나요?</p>
--

- 반반이었습니다.
- 의견이 반반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건으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사항]** 우리동네의원 진료시간(현행 8:30~19:00, 변경 후 8:30~18:30 / 야간(월요일) 현행 8:30~21:00, 변경 후 8:30~20:00)을 단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고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

**[기타사항]** 서안성운영위원회 기타사항 및 이정진대의원 요구사항 공유 및 대처 안 논의

**[논의사항]**

- 공식적 요구사항으로 일단은 대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달라. 이유로는 예산총회에서 예산 수립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부지매입과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예산총회를 진행하는데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는 3가지의 이유를 말을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 서안성운영위 회의록을 보시면 대화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전무님이 말한 그 부분은 전무님이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분은 의료협동조합의 운영방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답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한 상황이다.
- 현재 좋지 않게 생각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 예산총회 때 말했던 부분에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가결산을 해서 예산을 작성하고 서류가 있는데 그 분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 이정진 대의원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할지 고민이 된다.
-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의원 한분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대답을 했었나요? 그리고 또 불법이니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그것을 대응해야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
- 개인의 의사로 말하는 건지 관련법을 알고서 말씀을 하신 건지 의문이다.
-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저의 답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쨌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인 의견을 받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결정사항]** 감사와 전무이사가 이정진대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

**[추가 기타사항]**

- 서안성지점 조합원한마당(아나바다 운동) 사업계획 관련하여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식지에 간지로 넣어서 홍보를 하자는 의견 공유
- 조합원 탈퇴자의 사유 분석을 하자는 의견 공유